

평창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493 |
|----------|-----|

제출연월일 : 2025. 10. 23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본 조례의 근거 법령인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이 폐지되고,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으로 대체됨에 따라, 현행화 및 법적 정합성 확보를 위해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가. 근거 법령 현행화: 안 제2조

1) (기존)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11조제1항

1) (개정)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14조제1항

3. 참고 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 : 생략

-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호

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[기획예산과-15469(2025. 10. 1.)호]
- 3) 부패영향평가 : 부패유발요인 없음 [기획예산과-15469(2025. 10. 1.)호]
- 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 [가족복지과-36658(2025. 10. 1.)호]
- 5) 법제심사 : 적정 [기획예산과-15712(2025. 10. 13.)호]
- 6)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 : 원안의결 [기획예산과-16298(2025. 10. 20.)호]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11조제1항”을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14조제1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|
|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전략산업”이란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라 (이하 생략)</p> |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전략산업”이란 <u>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14조제1항</u>에 따라 (이하 생략)</p> |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

제14조(지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) ① 시

· 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구역의 시·군·구의 시장·군수(광역시·군의 군수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과 협의하여 해당 시·도의 지역특화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1.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
2.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
3.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(제3조제5항 관련)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
 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의안은 조례의 근거 법령 대체에 따른 현행화 사항으로, 기술적으로 비용을 추계하기에 어려움이 있음.

4. 작성자

| |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작성자 | 평창군 관광경제국 경제과장 전해순 |
| 연락처 | (033) 330 - 2540 |